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77 발의연월일: 2022. 12. 12.

발 의 자: 박대수 · 김용판 · 최춘식

김태호 · 최영희 · 박성민

김성원 • 구자근 • 임이자

조명희 · 하영제 · 지성호

윤영석 • 한무경 • 김희곤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은 신청서의 제출이 선행되어 야 수급자격 여부의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,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

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,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과세정보 제공 요청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대한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)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
- 2. 전자우편주소
- 3. 근로장려금 환급일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4조의2(과세정보 제공 요청)
	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
	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
	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
	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
	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
	세청장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
	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
	을 환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
	호의 과세정보(「국세기본법」
	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
	말한다) 제공을 요청할 수 있
	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
	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	1.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
	<u>함한다)</u>
	<u>2. 전자우편주소</u>
	3. 근로장려금 환급일자